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주방 위생환경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0.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50,000천원(보조금 3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 지원규모
 - 10개 업소 정도(예산 범위 내)
 - 업소당 최대 5,000천원(보조금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 교체 지원(단, 주방기기 교체는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
 -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정상등록 및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위생환경 개선

2. 사업 선정기준

- 선착순(단,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함) ※ 서류 미비 시 차순위자 선정

3. 사업 신청조건

-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 * 신규업소의 경우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 사업대상 확보 어려움 시 일반음식점 외 식품접객업소 지원 가능
- 최근 1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업소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3. ~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함양읍 고운로35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방전경사진, 견적서, 대표자 신분증, 보조사업자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 활용되므로 최대한 상세히 작성
- **2024. 11. 30.까지 보조사업 미완료 시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
 - ※ 해당일까지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접수해야 함
- 주방과 관련된 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함
- **완료 후 1년간 유지 관리하여야 함(위반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 시설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양도 가능(업종 변경 등은 보조금 환수)
(예외)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제외

6. 결과통보

- 선정 여부 문자 개별 통지, 차 순위자 예비명단 기재

7. 첨부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보조사업자 협약서

붙임 신청서류 각 1부. 끝.

2024년도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업소명 기재 (파란글씨는 예시임)		접수번호	
	성명 (대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60. 01. 01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010-1000-2000
	등록번호	영업신고증 번호		회원수	
신청내용	사업명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을 하려는 목적 기재			
	주요내용	주방 내 비위생적인 부분 등 도색, 교체 지원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자부담	기타
	5,000	3,500	1,500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합니다.

2024년 2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1) 1부.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각 1부.

※ (주의사항)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심사·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 및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 파란글씨는 예시임)

□ 사업명 :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을 기술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1.
- 사업대상 : 업 소 명
- 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주방 내 비위생적인 부분(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청소, 도색, 교체 지원

□ 추진계획

- 2024. 4. 3. : 건설업자 계약
- 2024. 4. 4. : 기존 구조물 제거

(“)

- 2024. 7. 1. : 보조사업 완료보고

□ 기대효과

- 주방을 개선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 등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계	보 조	자 부 담	기 타 (기부금등)	
계	5,000	3,500	1,500		
기존 구조물 제거	2,000	1,400	600		구조물 제거 1식
리모델링 내역	3,000	2,100	900		도색 00건 교체 00건

보조사업자 협약서

본인은 2024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확산에 모범이 되고 관광객 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024. 11. 30.(토)까지 보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 보조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부담토록 협약합니다.

2024. 2. .

업 소 명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